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연월일 : 2024. 12. 30.

발 의 자 : 문정복 의원

찬 성 자 : 29인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부담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현행 제14조의 효력이 2024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이나, 제14조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연내에 공포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이에 그 유효기간을 다시 연장하기 위하여, 현행 제14조와 동일한 내용을 담은 안 제14조의2를 신설함(안 제14조의2 신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조제4항에 따라 따로 증액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도 및 시·군·구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안 법률 제16673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2027년”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2024년”으로 한다.

안 부칙 본문을 삭제하고, 제1조부터 제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제 14조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제14조의2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u>제14조(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u> ① 국가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조제4항에 따라 따로 증액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도 및 시·군·구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	제14조(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현행과 같음)	<삭 제>

특별회계로 전출하
여야 한다.

<신 설>

제14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
비 부담에 관한 특
례) ① 국가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
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조제4
항에 따라 따로 증
액교부하여야 한
다.

② 시·도 및 시·
군·구는 「초·중등
교육법」 제10조
의2에 따른 고등학
교 등의 무상교육
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
당하는 금액을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

법률 제16673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유효기간)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법률 제16673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현행과 같음) 제2조(유효기간) ----- ----- <u>2027년</u>----- ----- --. 부 칙 <u>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	<u>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u> 법률 제16673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개정안과 같음) 제2조(유효기간) ----- ----- <u>2024년</u>----- ----- --. 부 칙 <u>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 <u>제2조(유효기간)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u> <u>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제14조</u>
--	---	---

		<u>를 인용한 경우에</u> <u>는 이 법에 따른</u> <u>제14조의2를 인용</u> <u>한 것으로 본다.</u>
--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조제4항에 따라 따로 증액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도 및 시·군·구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제 14조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제14조의2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조제4항에 따라 따로 증액 교부하여야 한다.	<삭 제>
② 시·도 및 시·군·구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4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조제4항에 따라 따로 증액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도 및 시·군·구는 「초·
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
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특별
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